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,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는바, 이에 맞도록 「군검찰 보존사무규칙」 등 4개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련 부처와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
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과 「형사소송법」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
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

제1조(「군검찰 보존사무규칙」의 개정)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지청을 포함
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
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첨부서류란의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
한다.

제3조(「군인연금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청구인 첨부서류란의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
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방위사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의3서식 중 “경찰청장·○○지방검찰청검사장(지청장)”을

“경찰청장”으로, 처리절차란의 “경찰청·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경찰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의4서식 중 “경찰청장·○○지방검찰청검사장(지청장)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의5서식 중 “경찰청장·○○검찰청검사장(지청장) 또는 ○○군 검찰부”를 “경찰청장 또는 ○○군검찰부장”으로, “장 직인”을 “직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록 등의 보존기관)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. 다만,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<u>검찰청</u> 에 송부해야 한다.	제5조(기록 등의 보존기관) ① 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공소</u> <u>청(지청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